	<b>교원업적평가위원회 규정</b>	문서번호	5-1-6		
		제정일	2012. 03. 01.		
		개정일	2020. 11. 01.		
		페이지	1/2	관리 부서	교무처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본 대학의 교원 업적평가 위원회(이하 '위원회'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전임교원)** 전임교원이라 함은 조교수, 부교수, 교수를 말한다.

**제3조(기능)** 위원회는 교원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**제4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교무처장, 기획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두고,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④ 위원장 유고시에는 총장이 위원 중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임명한다.

**제5조(의결)**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6조(회의주관)** 위원회는 교무처에서 주관한다.

**제7조(보고)** 위원회는 의결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한다.


**제8조(비밀유지)** 위원회 위원은 회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재심위원회)** 교원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어 재심을 청구할 경우에는 교원 업적평가 위원회에서 재심한다.

**제10조(준용)** 이 규정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후 이사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	<b>교원업적평가위원회 규정</b>	문서번호	5-1-6		
		제정일	2012. 03. 01.		
		개정일	2020. 11. 01.		
		페이지	2/2	관리 부서	교무처

**부 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